

등록번호	안전건설과-
등록일자	2018. 11. .
결재일자	2018. 11. .
공개구분	비공개

주무관	담당	과장
		
협 조		

**2018년도 지방하천(인북천) 재해예방 하상준설사업 시행 및
하천 준설토를 이용한 골재 재생산**

입찰설명서

2018. 11. .

인 제 군

지방하천 재해예방 하상준설 사업 시행 및 준설토 매입 대상자 선정 기준

I. 입찰개요

- 지방하천(인북천) 재해예방 하상준설사업 시행. (입찰자 본인부담)
- 준설사업으로 인한 준설토 매입.

II. 입찰참가자격

- ※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필한자로서 골재채취업(육상, 선별·파쇄) 등록업자.
- ※ 주된 영업 소재지가 인제군 관내에 있는 업체

III. 소요예상 물량

단위 : m³

구 분		모 래	막자갈	산출근거	비 고
계	9,763	6,834	2,929	모래70%, 막자갈30%	
서화면 천도리 585-1번지	9,763	6,834	2,929	모래70%, 막자갈30%	

※ 물량은 현장 여건에 의해서 변동 될 수 있음.

(하천골재 사용료기준: 모래 1,895원 막자갈 1,327원)

IV. 골재선별장소 : 준설토 일체 반출 후 선별·파쇄 신고업체 사업장.

V. 준설토 반출 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VI. 준설토 반출

- 가. 낙찰업체 결정 후 설계 물량에 의하여 허가 된 준설토를 반출한다.
- 나. 하천준설에 있어 공고 물량 또는 우리군의 허가량보다 허가기간 내 부족하게 준설되더라도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 다. 덤프로 반출시 25.5t → 15m³, 15t → 9m³ 골재량은 위와같이 통일한다.

라. 입찰방법은 하천골재 사용료 × 물량을 곱한 총액에 한하여 입찰하며, 최고가액에 준한다.

모래 70% = 1,895원/m³ × 6,834m³ = 12,950,430원

막자갈 30% = 1,327원/m³ × 2,929m³ = 3,886,783원

총 물량 = 12,950,430 + 3,886,783 = 16,837,210원 (원단위 절삭)

마. 입찰은 우리군 세무회계과 경리부서에서 시행한다.

Ⅶ. 사용료 정산

입찰 후 하천골재 사용료 징수 후 설계물량에 의하여 허가된 준설량 반출.

Ⅷ. 준설토 반출 절차

입찰 후 준설 착공 신청(군청 안전건설과) ⇒ 하천골재 사용료징수 ⇒ 반출증교부 ⇒ 반출 ⇒ 감시원 확인(반출증 회수)

Ⅸ. 기 타

가. 수질오염 및 환경영향 예방조치 이행

- 0 준설토 반출시 준설장비 및 운반 등에서 유류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오일 웬스, 흡착포 등 유류제거 장비를 비치하고 작업
- 0 장비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유는 적정용기에 수거 즉시 위탁처리 하고 노천에 방치금지.
- 0 준설토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탁을 감소하기 위한 오탁방지막(뚝) 및 오탁수 저감을 위한 저수조등의 설치.
- 0 일출 전, 일몰 후 선별 및 반출금지(야간소음방지)와 준설토 반출로 내외의 비산 먼지로 인한 오염발생을 고려 살수차 배치.

나. 준설토 반출시 유의사항

- 0 깃발설치

구 분	모 형
1. 육 상 ①설치간격 : 50m ②규 격 : 깃대-120cm 이상 깃발-가로 45cm, 세로 30cm ③재 질 : 깃대-철재 깃발-천 또는 두꺼운 비닐	<p>The diagram shows a flagpole with a flag. The flagpole is labeled '120cm' on the left. The flag is labeled '45cm' on top and '30cm' on the right. The flag is labeled '적색천 또는 비닐' (red fabric or vinyl). The flagpole is labeled '철재' (steel). The flag is 30cm below the top of the pole, labeled '30cm'.</p>

④색 상 : 적 색	
------------	--

- 0 응급준설 사업 표시판 설치 : 소정의 규격에 의한 표시.
- 0 준설 반출로에 위험 경고판 설치.
- 0 준설토 반출 완료 후 준설사업장 주변 평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반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감독관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0 준설 및 반출시 수반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비용은 입찰자 본인 부담이며 민원 및 문제 발생시 감독관청의 지시 하에 입찰자 본인이 해결하여야 함.